

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(2026년)



***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, 시행규칙 제44조, 제45조, 고시-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**



1. 사업개요

지역별 특수한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고용센터 취업알선 실시 및 고용 사업주 지원

2. 지원대상

지역	〈유형1〉 지원인원: 총 30명 지역의 고용사정을 고려하여 선정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	〈유형2〉 지원인원: 총 20명 구인난·고용위기 업종 中개선의지가 있는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
〈본사소재지 기준〉 구미시 김천시	① 실업기간 3개월 이상 청년(만 34세 이하) ② 구도패 3회 이상 참여 구직자 ③ 실업기간 3개월 이상 고령자(만 55세 이상)	① 전기, 전자부품제조업(26~28) ② 보건업(복지)(86, 87) ③ 방산,반도체 관련(26,29,31,41) * () 업종코드

3. 지원절차



*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채용 전 반드시 이행, 기업 컨설팅을 통한 체질개선 활동 완료 후 구인신청·취업지원체계가 원칙

4. 지원제외 대상

① 지원제외 사업주

- (고용조정제한의무 위반)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 (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 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함) 내에 사업장 소속 근로자 (본사, 지사 포함)를 해고나 권고사직 시킨 경우 (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)
-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(23.1.1. 이후 고용된 근로자 및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)
-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밖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
- 국가·공공기관·공기업과 같이 공공성이 강하고, 예산 등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*과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 등 사회통념상 지원 필요성이 낮은 업종(*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)

② 지원제외 근로자

-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
-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
-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
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
-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·관련 사업주(인수, 합병, 양도, 양수 등)에게 고용된 근로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, 다만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지원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-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및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

5. 지원 기간 및 금액

-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1인당 **6개월 단위 360만원**, 1년간 **총 720만원** (대규모기업은 6개월 단위 180만원, 1년간 총 360만원)
- * 사업주가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로 지원,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 일할·월할 단위는 지급하지 않음

6. 신청 기간

- ★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6개월분 신청★ (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, 일할·월할 단위는 지급하지 않음)

7. 지원 인원 한도

- 채용일 직전년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(소수점 이하 버림)
- * 단, 최대 30명,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및 당해연도 신규사업장 3명 한도

8. 제출서류 및 방법

① 제출서류(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제45조제2항)

- 「고용촉진장려금」지급 신청서(사업주확인서 포함), 근로계약서, 월별임금대장, 관련 증빙서류 (체질개선계획 완료 증빙자료) 등 * 증빙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“원본대조필”을 날인하여 제출요망

② 제출방법

- 온라인 신청: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
- ☎ 문의처: 본사 소재지 기준 관할 고용

관할 고용센터	구미고용센터	연락처
관할지역	구미시 전역 김천시 전역	(지원금 문의 기업지원팀) 054-440-3362 (구인신청 문의 취업지원총괄팀) 054-440-3317

